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이유서

의안번호

163

제출일자 : 1993. 2. 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우리구의 행정운영동중 하단 제2동, 신평 제2동의 동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 제2조 “별표”중 구분란 하단 제2동, 신평 제2동의 위치를 각각 하단동 1161-3, 신평동 647-1로 함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조 1항내지 2항